

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
구축사업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형 미래융합 신산업의 소재·부품 관련 실증인프라 고도화,
‘R&D→실증→사업화→해외진출’ 등 소과정을 지원하는 미래
혁신형 클러스터 조성으로 산단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
- 나.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회계연도 구미시
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
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
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2) 출연금액 : 금1,000,000천원(도비 300,000, 시비 700,000)

※ 2차년도('21. 1월 ~ '21. 12월) 소요예산 중 지방비 매칭금액

(3) 사업내용 : 개방형 혁신랩 및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한
미래 신산업 핵심소재 부품관련 전주기 실증지원

(4) 출연근거

- 법 령 : 지방재정법(제18조), 국가균형발전특별법(제3조), 과학기술기본법(제16조의3), 산업기술혁신촉진법(제19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20조)
- 조 례 :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(제5조, 제9조, 제10조)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나. 주요 사업

- (1) 사 업 명 :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
- (2) 사업기간 : 2020년 9월 ~ 2023년 12월(40개월)
- (3) 사업위치 : 구미시 첨단기업1로 17 (구미전자정보기술원)
- (4) 총사업비 : 198억원 [국비 135, 도비 11.1, 시비 25.9, 민자 26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
		'20년	'21년	'22년	'23년
계	198	56.5	51.5	46.5	43.5
국 비	135	43	35	30	27
도 비	11.1	2.1	3	3	3
시 비	25.9	4.9	7	7	7
민 자	26	6.5	6.5	6.5	6.5

(5) 추진주체 : 산업통상자원부, 경상북도, 구미시

(6) 전담기관 : 한국산업단지공단

(7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8) 사업내용

- 신산업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협의체 간 기술정보 교류, 컨설팅,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개방형 혁신랩 구축
- 소재분석, 제품설계, 연구개발장비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
- 완성제품, 소재·부품기업, 소프트웨어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학·연으로 구성된 융합얼라이언스 운영
- 테마별 신사업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R&D, 실증, 사업화 단계인 마케팅까지 단계별 기업 성장지원

(9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9. 5~2020. 2. :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 특구조성 연구용역
- 2019. 8 :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(산업부)
- 2019. 9 : 스마트 산단 구미 공모선정
- 2019. 12 : 2020년 국비예산 확보(45억원)
- 2020. 4~ 2021. 1 : 스마트산단 종합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
- 2020. 7~8 : 주관기관 선정 사업공고 및 심사
- 2020. 下 : 중앙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산업 간 융합활성화를 통한 구미형 신산업 시장 창출 요구로 기존 공급중심이 아닌 수요중심의 개방형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

- 스마트 산단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·중견기업 주도의 수평-수직적 상생협력 강화로 자생적 신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
- 첨단공동활용 장비, 통합지원 플랫폼 등 지역 역량 집적화를 통해 단계별 기업 성장 지원 체계 구축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3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, 제9조, 제10조
-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□ 「과학기술기본법」

제16조의3(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)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·유통

2.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·단체와 교육기관·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
3. 전문인력의 양성
4.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인력·기술·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·협력
5.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
6.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

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(산업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"산업기술 개발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, 부품·소재 및 장비·설비(플랜트를 포함한다) 기술
 2.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
 3.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,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
 4.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·시스템 기술
 5.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·자원기술
 6.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2조 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
 7. 디자인·브랜드·표준 관련 기술, 유통·전자거래 및 마케팅·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
 8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
 9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
 10. 삭제 <2013. 3. 23.>
 11.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
 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
 13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

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(이하 "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

2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(이하 "참여기관"이라 한다)

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기획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

2.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

2. 산업기술 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

3. 연구장비·시설·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(集積化) 촉진

4.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·관리 및 활용의 촉진

5. 산업기술의 표준화, 디자인·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

6.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·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

7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-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(제1항은 제외한다)
·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관연구기관"
은 "주관기관"으로, "산업기술개발사업"은 "산업기술기반조성사
업"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
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
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

- 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
국가기관, 정부출연기관, 공공기관,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, 과학
기술인 단체 등(이하 "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 다음
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(이하 "진흥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
수 있다.

1.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
2.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

가. 첨단·지식기반·뷰티·탄소 및 물산업

나. 부품·소재산업

다. 신성장동력산업

3. 중소기업 신기술·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(이하 “관련사업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력 육성사업

2. 문화 확산사업

3. 혁신역량 등 강화·활성화사업

제9조(관련사업 추진)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경비보조)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 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 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 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신산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김 창 열
	담 당	신 미 정
	담 당 자	김 혜 진 (480-6153)